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단94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연육의 수입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농산물 및 수산물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어육 제조,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등으로부터 연육을 공급받던 회사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원고는 2013. 6. 5.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027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7.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에게 368,050,9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E의 거래 및 피고의 지급명령신청 등

- 1) E는 2011년경 피고로부터 연육을 공급받고,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E에 대하여 2011년도 1/4분기에 총 31,680,000원, 2011년도 2/4분기에 총 45,000,000원, 2011년도 3/4분기에 총 18,000,000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2) 피고는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차972호로 미지급 물품대금 32,750,500원(2012. 1. 13. 기준)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18. 위 법원으로부터 'E는 피고에게 32,75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12. 1. 19.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561호로 E에 대한 32,750,5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2. 4. 20.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8636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E는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었고, 2019.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0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2020. 1. 6.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에 연육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E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E의 영업부장 I, 경리과장 J 등과 공모하여 총 94,6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E로부터 200,38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F로부터 32,750,000원을 추심함으로써 E의 지급액 200,380,000원 및 추심금 32,750,000원을 각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인 E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돈 중 E의 지급액과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차액인 105,700,000원(= 200,380,000원 - 94,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E에 연육을 납품하지 않았거나, 납품한 물품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E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K 주식회사로부터 연육 등 물품을 매수하여 E에 이를 납품하고, E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희진